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6
----------	-----

제출년월일 : 2009. 3. .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08. 7. 3)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비율)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류별 정원비율 명시(안 별표1)
 - 타 구군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적정비율 책정
-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안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 현행 정원비율을 감안하고 타 구군 형평성을 반영
 - 기능직 공무원
 - 하위직급 편중 해소 및 직원 사기진작
 - 별정직 공무원
 - 종전 행안부령 규정대로 적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3)
 - 5급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는 규칙으로 규정
 - 녹지공원과 인력보강을 위한 직종 변경(기능직 △1→일반직 증1)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2009. 2. 13 ~ 3.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신 설</p>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변경전>**[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계	547	377	16	38	116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53	296	10	34	113
2급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8	2	3	13
6급	92	67	2	5	18
7급	136	100	4	13	19
8급	137	91	1	12	33
9급	46	16			30
별정직 계	2	2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계	91	78	6	4	3
기능6급	3	3			
기능7급	9	8	1		
기능8급	17	17		1	
기능9급	28	23	1	1	3
기능10급	34	27	4	3	

<변경후>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2% 이상	17% 이내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계약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4% 이내	8.2% 이내	22% 이내	32% 이내	28.4% 이내	8%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7%이내	14%이내	22%이내	36%이내	21%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 이내	19% 이내	48% 이내	24% 이내	2%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국	직속기관	동
총 계	547	377	16	38	116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u>454</u>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7	19	2	3	13
6급 이하 계	<u>411</u>		-		
별정직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계	<u>90</u>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7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 일자 : 2009. 3. 3(수)
- 나. 제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9. 3. 5(목)
- 라. 위원회 상정 : 2009. 3. 12(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2008. 7.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비율)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가. 종류별 정원기준(비율) 명시(안 별표1)
 - 일반직(82%이상), 기능·고용직(17%이내), 별정·정무직(1%이내)
- 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명시(안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 현행 정원비율을 반영하고 중간층(6·7급) 보강
 - 기능직 공무원 ⇒ 하위직급 편중 해소
 - 별정직 공무원 ⇒ 종전 행안부령 규정대로 적용
-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3)
 - 5급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는 규칙으로 규정
 - 직종 변경(기능직 △1→일반직 증1)

5.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2(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제24조(정원의 관리)
- 제29조(직급별 정원) • 제30조(정원의 규정)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가. 본 조례는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 2008. 7. 3자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으로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명시하고,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종전에는 기관별로 전직급을 모두 명시 하던 것을 5급이상만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 다만,

- 안 제3조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을 [별표1] 과 [별표2]와 같이 책정 기준을 마련하였음.
- [별표1]과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되는 비율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 규정되어 있음.
- 이렇게 비율이 조정이 되면 현재 정원과 대비했을 경우 직급별로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